



제429회 국회 (정기회)
제2차 외교통일위원회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 기본계획 등 국회보고 〉

■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(의안번호 제2209059)

2025. 9.

외 교 통 일 위 원 회

전문위원 김 사 우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김태호의원 등 10인
2. 발 의 일 : 2025. 3. 18.
3. 회 부 일 : 2025. 3. 19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,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,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기본계획·시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(안 제4조의3제7항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임(안 제4조의3제7항 신설).

현행	개정안
제4조의3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 ① ~ ⑥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조의3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<u>⑦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이 법 시행 이후 완료된 추진성과 분석부터 적용한다.

- 현행 「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북한이탈주민법”) 제4조의31)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

1) 제4조의3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 ① 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)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며,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.

□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, 그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을 완료한 경우에 이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.

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인권, 복지, 사회통합 등의 복합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
2.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,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에 관한 사항
3.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
4.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사항
5.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
6.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, 정착지원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⑤ 통일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적 요소를 포괄하므로, 그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그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의 필요성이 있고, 이를 통해 계획의 체계성, 성과의 달성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경우 정책의 수정 및 개선의 계기가 되고, 아울러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타당한 내용으로 판단됨.

〈 정책계획이나 실태조사 결과 등 국회 보고 입법례 〉

법률명	조문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	제13조(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)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만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②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. 다만,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5. (생략) ④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(이하 “기본계획등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 <u>기본계획등의 수립: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</u> 2. <u>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 변경: 변경 후 30일 이내</u>
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	제5조(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)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5. (생략) ③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<u>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진행경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</u> 하여야 한다.

북한인권법	제6조(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)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(이하 “집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.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<u>지체 없이</u>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--------------------	--

-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함. 다만, 장기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부가적으로 제시함.

문 의 처
02)6788-5267